

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권향엽의원 대표발의) 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통칭하는 지역을 ‘산업위기지역’으로 정의하고, 제4장(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지원 등)의 적용대상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서 산업위기지역으로 확대함(안 제2조제4호,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, 제20조의2 신설).
- 시·도지사가 주된 산업의 주요 산업지표가 현저히 악화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 대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(안 제9조제3항)
-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간이 만료된 지역에 3년의 범위에서 지역경제 안정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되, 지정기간이 지정일로부터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(안 제10조제7항)
-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에 대한 지원 자금에 ‘소재·부품·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’를 추가함(안 제15조제2항제2호 신설).

II. 검토의견

1.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책무 규정 정비

- 안 제20조의2의 조 제목을 본문 내용에 맞게 ‘책무’에서 ‘협조 등’으로 변경하고, 제1항 중 ‘산업위기지역에 대한 지원 등’을 산업위기지역의 지정, 지원 및 관리 등’으로 구체화하며, 제2항 후단의 협의요청을 받은 관리기관의 장에게 의견제시 기한(30일)을 설정하고 있으나, 유사 입법례¹⁾를 고려하여 조문을 정비함.

개 정 안	수정의견
제20조의2(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책무)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위기지역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·도지사에게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·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	제20조의2(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협조 등)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위기지역의 지정, 관리 및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·도지사에게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 <후단 삭제>
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·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관련된 관리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항에 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	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·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관련된 관리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항에 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. <후단 삭제>

1) 협조·협의요청에 대한 다수의 입법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.

(유사 입법례) 「범죄피해자 보호법」 제14조(관계 기관의 협조) ①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·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.

개 정 안	수정의견
<u>으면 30일 이내에 협의를 요청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·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.</u> <u><신 설></u>	<u>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</u>

2. 다른 법률의 개정

-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 근거가 제8조에서 제8조의2제1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다른 법률에서 이를 인용하고 있는 것을 개정함(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6제1항2))

3. 그 밖의 사항

- 안 제8조의2제4항은 ‘산업통상부장관은 필요한 경우---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’로 규정하여 시책 수립이 의무인지 재량인지 알 수 없으므로, ‘필요한 경우’를 삭제하여 시책 수립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.

2)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21조의26(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 및 투자를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)

-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 계획(이하 이 조에서 “사업재편계획”이라 한다)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. 이하 이 조에서 “양도차익상당액”이라 한다)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[「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」 제8조에 따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지역(이하 이 항에서 “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”이라 한다)에 소재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4개 사업연도]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(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 소재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5개 사업연도)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.

- 그 밖에 개정안의 체계 및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조문 표현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자세한 수정사항은 주서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III. 관계기관 의견

- 안 제15조제7항³⁾과 관련하여, 금융위원회는 다음의 사유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책금융기관 등에게 자금지원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므로,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임.
- 첫째, 중앙행정기관의 장(금융위원장 포함)은 정책금융기관 및 시중은행 자금의 직접적인 관리 주체가 아님.
 - 정책금융기관 및 민간 금융회사의 자금공급은 각 기관 리스크 관리 및 여신심사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함.
- 둘째, 산업통상부장관이 자금지원을 요청하는 것은 정책금융기관 및 시중은행의 자율적 경영활동에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.
- 셋째, 산업정책을 수행하는 주무부처 장관에게 정책금융 및 민간 금융 연계 요청권을 부여하는 것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.
- 넷째, “금융위원장이 정책금융기관 및 시중은행에 자금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” 등 내용을 포함한 유사 입법례를 찾아보기 어려움.

3) 안 제15조(자금 지원 등)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자금 지원이 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」 제8조의2제2항(*)에 따른 정책금융기관 및 시중은행 등의 자금을 사용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해당 자금의 관리주체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

(*)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8조의3(사업재편 협력체계 구축) ②정책금융기관및 시중은행 등은 산업생태계의 선제적 혁신 및 신속한 재편 이행을 위하여 사업재편 수요기업을 발굴·추천할 수 있으며, 산업별·지역별 사업재편지원협의회와 협력하여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(전문위원 박 혜 진)